

『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1월 26일

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근 도

나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「하수도 사용료 부과·징수 체계 개선 방안」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, 하수도 사용료 부과·징수에 따른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시민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구체적으로 설정(안 제2조)

(현행)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

(변경)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

○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를 구분하여 부과(안 제16조)

(현행) 배수구역(또는 하수처리구역)대상

(변경)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대상

○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포괄적 규정 삭제(안 제30조)

(현행)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(변경)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

○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기간의 합리적 설정(안 제31조)

○ 과오납급 소멸시효 설정(안 제32조의2)

(신설) 사용료 및 수수료 소멸시효 3년, 그 외 징수금 5년 설정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, 「민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
○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강 창 조

○ 본 「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하수도 사용료 부과 시 부과기준과 환급절차 등 구체적 기준과 불복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전국 16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사용료 부과에 대한 구제절차를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·징수체계 개선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